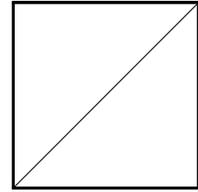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45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8. 24. (제 14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8. 24.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행사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치명령 행사범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지정하면서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63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10. ~ 8.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별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6조제8호”를 “법 제416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다른 수단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것
2. 조치명령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것
3. 조치명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피해와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어 제3항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7조제2항제1호가목 중 “법 제416조제7호”를 “법 제416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22 제2호 더목 및 러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u>법 제416조제8호</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11. (생 략)</p> <p>② <u>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u></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u>법 제416조제1항제8호</u>----- -----.</p> <p>1. ~ 11. (현행과 같음)</p> <p>② <u>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u></p> <p>1. <u>다른 수단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것</u></p> <p>2. <u>조치명령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것</u></p> <p>3. <u>조치명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u></p> <p>③ <u>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u></p>

<신 설>

<신 설>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1. 거래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16조제7호의 사항 중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업무

나. (생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피해와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어 제3항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 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법 제416조제1항제7호--

나. (현행과 같음)

2. (생략) ③·④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감독국
연락처	02-2100-2656	02-3145-7587